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의 강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해야 할 것이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공매처분의 확행,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의 강화, 출금금지의 요청,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인인 체납자의 경우는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를 활성화하여 이를 체납자의 자진납세의 유도, 성실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동시에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도 강화하여야 하겠다.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의 적극적인 정리도 추진하면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강제 인도 및 공매 등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납자의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으로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되 시효경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병행하면서 지방세정의 신뢰성의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체납세 징수는 단순히 세수감소에 따른 자주재정 확보라는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체납세의 방치 내지 증가는 납세윤리의식을 크게 저해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불형평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조세정의 및 과세형평의 실현 차원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라. 탈루·은닉세원 발굴노력 강화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자료의 정비·관리 및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미이행 등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세원을 은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등 친절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금년도에 지방세 세무조사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과표의 과소신고, 신고누락 등 누락세원의 포착,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내역이 적정한지의 조사, 본점사